

수입식품 이슈 토크(Issue Talk)!
— 수입식품등 보완 · 부적합 사례 —

2026. 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 ❖ 본 자료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에서 영업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입통관을 돕기 위해 수입식품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사례(표시기준 위반, 관능검사 부적합 등)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안내서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수입식품 등 신고 업무에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본 자료의 내용은 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및 고시의 제·개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타당성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관련 법령 및 고시 원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 차



I. 수입신고 보완 처리의 기준 및 발생 사례	1
① 보완 처리의 기준 및 절차	1
② 주요 보완 발생 사례	2
II. 수입신고 부적합 처리의 기준 및 발생 사례	8
① 부적합 처리의 기준 및 절차	8
② 주요 부적합 발생 사례	9
III. 수입신고 주요 질의(Q&A)	14
<구비서류 관련>	14
<표시사항 관련>	18
<기타>	22
[붙임1] 수입신고 보완 관련 규정	24
[붙임2] 수입신고 부적합 관련 규정	26

I. 수입신고 보완 처리의 기준 및 발생 사례

① 보완 처리의 기준 및 절차

○ 주요 보완 사유

- ✓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 한글표시사항 등의 표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농·임산물 관능검사 결과 선별조치 대상인 경우
- ✓ 현장검사 결과 다른 제품과 혼재되어 신고제품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
- ✓ 수입업자의 수수료 미납으로 시험·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

○ 보완 처리절차: (1차) 보완 요구 ⇔ (2차) 보완 요구 ⇔ (3차) 수입신고 반려

* 관련 규정: 붙임1 참고

구분	처리기한	처리근거	미이행시 행정절차
1차 보완	보완 내용에 따라 필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통상적으로 서류보완 등은 14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2차 보완
2차 보완 ¹⁾	10일 이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반려 ²⁾

1) 민원인이 1차 보완 기간 내에 이행이 어려워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검토 후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연장(2차 보완)

2) 2차 보완 기간 내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시 수입신고 반려 조치

② 주요 보완 발생 사례

- ❖ 다음 예시는 실제 보완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AI 생성)되어 관련 법령 및 실제 표시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공식품]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삭제(NO ADDED SUGAR)

사례 말린과일(원재료)을 사용한 과채가공품 제품에 'NO ADDED SUGAR' 표시



보완 제품에 표시된 'NO ADDED SUGAR' 삭제

☞ 농축, 건조 등으로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말린 과일 등) 제품에 '설탕 무첨가' 표시 불가

Tip.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을 표시할 수 있는 제품

①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 ②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③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젤리·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④ 농축, 건조 등으로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말린과일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⑤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

☞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제1호아목3)의다)

2 [가공식품]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삭제(NATURAL, NATURE)

사례 과자의 제품명에 '네이처○○' 및 포장지 전·후면에 'NATURE' 표시



보완 유통공정을 거친 제품에 표시된 '네이처', 'NATURE' 삭제

☞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세척, 박피, 절단, 압착, 분쇄 등)을 거친 식품에만 "천연", "자연"(natural, nature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 포함)이라는 표시·광고를 할 수 있음

Tip.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 자연 등"의 부당한 표시 내용

① 합성향료물질·착색료·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등, ② 비식용 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세척, 박피, 절단 등)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등, ③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먹는물, 유전자변형식품등, 나노식품등

☞ 근거: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차목

3 [가공식품]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 보완(알레르기 유발물질)

사례 빵류의 원재료 중 토마토가 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서 '토마토' 누락



보완 한글표시사항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토마토' 표시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
(다만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생략 가능)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참고>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Ⅲ. 수입신고 주요질의(Q&A)의 Q.17(21p) 참고

☞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Ⅰ.1.

4 [가공식품]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 보완(당알코올 함유 제품)

사례 당알코올류 10% 이상을 함유* 한 캔디류 제품에 당알코올 관련 소비자 주의문구 관련 표시 누락

제품명 00캔디	식품유형 캔디류
소비가한 제품 뒷면 별도 표기일까지 (읽는법: 일/월/년순)	내용량 100g (370kcal)
영양정보	
총 내용량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5mg 0%	탄수화물 98g (98%)
트랜스지방 0g	당류 0g 0%
콜레스테롤 0mg 0%	지방 0.5g 1%
포화지방 0g	0%
단백질 0.5g 1%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2,000kcal 기준)
원재료명	이소말트(감미료) 84.03%, D-소비톨(감미료) 7.14%, 천연향료 0.36%, 아스파탐(감미료)(페닐알라닌함유)
포장재질 폴리에틸렌	원산지 수입원: (주)

AI 생성 이미지

보완 당알코올류* 10% 이상 함유에 따른 한글표시 사항 보완

*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 등

☞ ① 당알코올, ②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③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주의문구 표시
(예시) 당알코올(D-말티톨 10%, D-소비톨 4%),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Ⅱ.마.

5 [가공식품] 소비기한 읽는 방법 표시 보완

[사례] 현품에 수출국 소비기한이 “월/년순”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한글표시사항 소비기한 읽는 법을 “년/월순”으로 표시



[보완] 현품 수출국 표시 소비기한과 한글표시사항 소비기한 읽는 법이 일치하도록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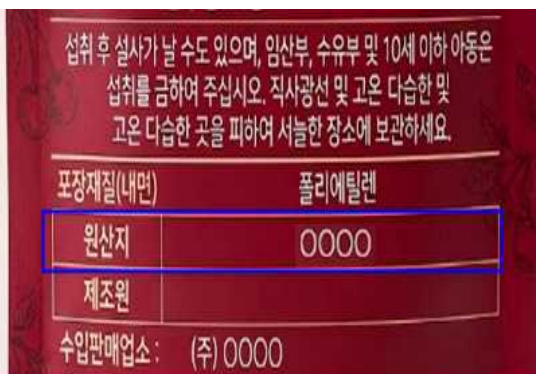
☞ 수출국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표시기준*과 다를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함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해당 “월”의 1일로 표시

* (소비기한)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소비기한 :○○○○년○○월○○일”로 표시

☞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라. 7)항 관련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라.

6 [가공식품]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미표시 보완

[사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인 과채가공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한글표시사항에 ‘OEM’ 미표시



AI 생성 이미지

[보완]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 생산제품(OEM)임을 표시

☞ “원산지: ○○(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 “원산지: ○○(위탁생산)”, “○○ 산(위탁생산)”, “원산지: ○○(OEM)” 또는 “○○산(OEM)”

※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주표시면에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농·임·축·수산물로서 자연상태의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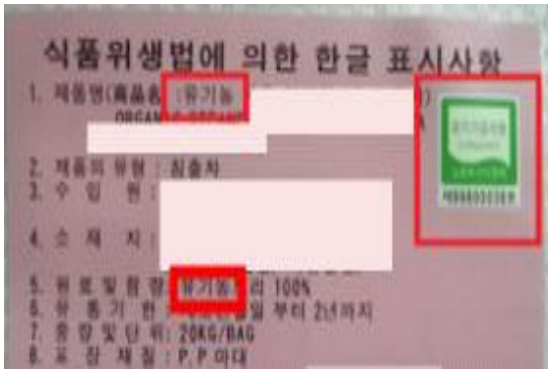
Tip.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이란?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 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을 말함

☞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1.사

7 [가공식품] 검사결과 유기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표시 삭제

[사례] 침출차에 대한 무작위 검사 결과 잔류농약 테부코나졸이 검출되어 '유기식품'에 해당되지 않음



[보완] 잔류농약 검출로 유기관련 표시 삭제 및 수입신고서 정정 보완

☞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음, 수입신고인은 유기식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음

☞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8 [가공식품] 검사결과 식품조사처리식품에 해당되어 표시 보완

[사례] 조미건어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식품조사처리가 확인되었으나, 제품 표시사항에 해당 공정에 대한 정보가 없음



※ 조사처리된 식품임에도 이를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 미표시

[보완] 방사선조사 관련 제조사 증명서 제출 및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 표시

☞ (예시) "방사선 조사", "감마선 조사", "방사선 살균", "방사선 살충", "감마선 발아억제", "전자선 발아억제", "감마선 살균", "전자선 살균", "감마선 살충", "전자선 살충" 등



Tip. 조사처리 허용품목

품목	조사목적	선량(kGy)
감자, 양파, 마늘	발아억제	0.15 이하
밤	살충·발아억제	0.25 이하
버섯(건조 포함)	살충·속도조절	1 이하
난분, 전분	살균	5 이하
곡류(분말 포함), 두류(분말 포함)	살균·살충	5 이하
건조식육, 어류분말, 패류분말, 갑각류 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건조채소류(분말 포함), 효모식품, 효소 식품, 조류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 포함) 제품류, 조미건어포류	살균	7 이하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 침출차, 분말차, 특수의료용도식품	살균	10 이하

※ 식품조사처리는 허용된 원료나 품목에 한하여 위생적으로 취급·보관된 경우에만 실시. 발아억제, 살균, 살충 또는 속도 조절 이외의 목적으로는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한번 조사처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식품(Irradiated food)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 됨

☞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4.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3.6)

9 [가공식품] 검사결과 에탄올 검출에 따른 '무알코올' 표시 보완

사례 혼합음료 제품 한글표시사항에 '무알코올(성인용)'으로 표시하였으나, 정밀검사 결과 에탄올 0.008% 검출



AI 생성 이미지

보완 '무알코올(성인용)' 표시 삭제,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으로 표시 보완

☞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①는 표현,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②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 알코올 상품이 아니^③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알코올) 1% 미만 함유"를 표시

- ① 알코올이 없다: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 ②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No alcohol added(성인용)
- ③ 알코올 상품이 아니다: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1.카

10 [기구·용기] '식품용' 문구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사례 고무장갑 제품에 '식품용' 문구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누락



보완 한글표시사항에 '식품용' 문구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식품용 기구 도안 >



☞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4.가.3)

11 [기구·용기] 추가 재질이 확인되어 재질증명서등 제출

사례 도마 제품을 수입신고 하면서 '폴리프로필렌' 재질로만 신고하였으나 도마의 빨간색 테두리 부위가 '고무제*'로 확인



AI 생성 이미지

보완 수입신고한 재질 이외의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이 추가로 확인되어 정확한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 회사 자료 제출, 수입신고서 정정 및 한글표시 보완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제조회사를 통해 재질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식품에 닿는 모든 부위의 재질을 신고, 재질명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명칭으로 신고하여야 함

☞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12 [수산물] 진위판별(유전자) 검사결과에 따른 수입신고 제품명 정정

사례 조기(냉동)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참조기와 부세 진위판별(유전자) 검사 결과, 수입신고 제품(품목)명과 상이한 '부세(냉동)'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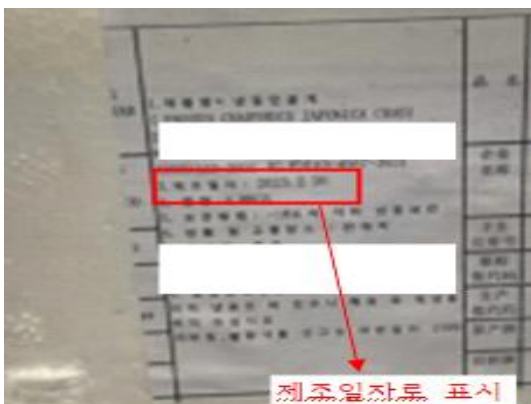
보완 신고 제품(참조기)가 다른 제품(부세)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의 제품명 정정 및 수출국 위생증명서 제출

※ 부세와 참조기 비교

< 부세(수입신고 제품) >	< 참조기 >
 ☞ 몸 등쪽은 황갈색, 중앙은 은백색을 띠고 배쪽은 선명한 황금색을 띠	 ☞ 몸 등쪽은 암회색을 띠고 배쪽은 희미한 황금색을 띠
 ☞ 머리에 마름모 모양의 유상돌기가 보이지 않음	 ☞ 머리에 마름모 모양의 유상돌기가 잘 보임
 ☞ 참조기에 비해 측선이 얇음	 ☞ 측선이 선명하고 두꺼움

13 [수산물] 자연산물 '제조일자' 표시 보완

사례 수산물인 '냉동민꽃게'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표시



보완 현품에 표시된 '제조일자' 대신 수산물의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로 정정하여 표시

☞ 자연상태 식품(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제조일자 또는 제조일 대신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로 표시하여야 함

☞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1.페.2)다)

II. 수입신고 부적합 처리의 기준 및 발생 사례

① 부적합 처리의 기준 및 절차

○ 주요 부적합 사유

- ✓ 식품등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원료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허용 외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검출 등)
- ✓ 수산물의 경우 수입신고서상 신고품명 외 이종품(신고품명과 다른 품명)이 혼입된 경우
(단, 선적오류 등으로 이종품이 혼재되었으나, 포장단위 별로 선별 가능하고, 제품명이 실제 품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처리)
- ✓ 허위(위조)증명서 제출 및 제조일자(생산일자, 포장일자) 또는 소비기한을 위변조하는 경우 등

○ 부적합 처리절차

* 관련 규정: 붙임2 참고

-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①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②다른 나라로의 반출, ③폐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수입자는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하여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모든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함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의미

<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영업자 책임사항 >

부적합통보서 발급
(지방식약청)

반송·반출·폐기
및 식용 외 용도전환
(영업자)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이행

* 교육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시간 이상
(영업자)

- ※ 부적합 제품을 향후 계속적으로 수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적합 원인을 규명하고 부적합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출국 제조회사에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적합 원인분석을 위한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청에 문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한 수입자에게 부적합 원인 규명과 제조업소에 대한 개선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수입식품의 안전책임을 수입 영업자가 책임 지도록 하고 있음

② 주요 부적합 발생 사례

- ❖ 다음 예시는 실제 보완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AI 생성)되어 관련 법령 및 실제 표시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사례 ① 과자에 허용외 타르색소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사용

② 과실주에 보존료 ‘안식향산나트륨’ 사용

③ 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이 아닌 절임식품에 타르색소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사용

④ 캔디류에 ‘카페인’ 사용

⑤ 인삼성분이 함유된 고형차에 ‘카라멜색소’ 사용

부적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식품별 기준 및 규격>

① 과자류: 허용외 타르색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됨
(캔디류, 추잉껌, 빵류에 한함)

② 과실주: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됨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0.2 이하(소브산으로서, 탁주, 약주, 과실주에 한한다)
-----------------------	----------------------------------

③ 절임식품: 타르색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됨
(다만, 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은 제외)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④ 카페인: 탄산음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카페인의 사용량은 무수건조물로서 탄산음료의 0.015% 이하(다만, 최종적으로 탄산음료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음료베이스는 0.075% 이하)이어야 함

⑤ 카라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 근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I.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I. 품목별 사용기준

2 컵모양 등 젤리 제조·가공기준 위반

사례 ① 컵모양 젤리의 크기가
뚜껑내경 6.7cm, 바닥내경 5.5cm,
높이 3cm인 제품을 수입신고



② 컵모양 젤리의 원료로 '곤약' 사용
* 실제 수입신고서 중 일부

종리	종리	100
- WATER	- 정제수	91.27
- KONAAC POWDER	- 곤약분말	0.83
- CITRIC ACID	- 구연산	0.28

부적합 흡입하여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 젤리
제조·가공 기준 위반

<흡입하여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 젤리의 제조·가공 기준>

(1) 젤리의 크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제조
하여야 함

- ①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cm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cm 이상
- ② 긴 변의 길이가 10cm 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cm 미만
- ③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젤리의 중량이 60g 이상

(2) 컵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 '곤약, 글루코만난'을
겔화제로 사용할 수 없음

☞ 근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3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사례 절임식품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현품에 표시된 보관방법
"0℃~10℃ 냉장보관"을 위반하여
실온 보관(창고온도: 24.0℃)



부적합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보관에 따른
보존기준 위반

☞ 식품은 정해진 보존 및 유통온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

Tip.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 35℃, 상온제품은 15~ 25℃, 냉장제품은
0~ 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
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함

☞ 근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4. 보존 및 유통기준

4 농산물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① 고추



⇒ 검사결과: 부패 8.3%, 이물 0.1%

② 대두



⇒ 검사결과: 곰팡이 8.7%, 부패 10.8%, 이물 0.1%

③ 망고



⇒ 검사결과: 부패 53.3%

④ 커피원두



⇒ 검사결과: 곰팡이, 부패 80.8%

부적합 곰팡이 및 부패의 결함 비율이 기준 초과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결함의 백분율	판정	비고
고추·대두·옥수수 : 1% 미만 마늘 : 3% 미만 기타 농·임산물 : 5% 미만	적합	
고추 : 1% 이상 ~ 3% 미만 대두·옥수수 : 1% 이상 ~ 5% 미만 마늘 : 3% 이상 ~ 20% 미만 기타 농·임산물 : 5% 이상 ~ 20% 미만	선별조치	보완
고추 : 3% 이상 대두·옥수수 : 5% 이상 마늘·기타 농·임산물 : 20% 이상	부적합	반송·폐기
수경재배마늘의 혼입 : 1% 이상	부적합	반송·폐기

※ 결함의 백분율(%) 산정 방식

$$\text{결함의 백분율(\%)} = \frac{\text{결함의 합(g)}}{\text{관능검사 시험량(g)}} \times 100$$

☞ 근거: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의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5 수산물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① 냉동 청어(외관 부적합)



* 해동후 복부 파손으로 청어알, 유문수, 기타 내장이 밖으로 돌출됨

② 냉동점박이절단꽃게(선도, 색깔 부적합)



③ 건조새우(선별 및 이물 부적합)



부적합 성상 부적합

<제품별 관능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제품별	제품별 관능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냉동품	- 외관·색깔·선별·선도·건조 및 유소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6.13.1에 의하며, 이물(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경우 포함)은 적합·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해동하지 않으면 현장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동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 어체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입하여 동결한 것은 부적합 판정하며, 어류 및 낙지의 경우 구체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은 [표3] 인위적 물주입 냉동어류 검사방법과 [표4] 인위적 물주입 냉동낙지 검사방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기타 수산물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건조품	외관·색깔·선별 및 풍미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 8.6.13.1에 의하며, 이물은 적합·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수산물의 성상 관능검사 기준>

☞ 성상(관능검사)검사시 외관, 색깔, 선별 항목은 각 수산물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종류별로 검사 항목이 정하여진 것은 이를 포함하여 다음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가 평균 3점 이상이고 1점 항목이 없어야 함

구분	항목	채 점 기 준
공 통	외 관 (형태)	1. 손상과 변형이 없고, 처리상태가 우량한 것은 5점 2.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고, 처리상태가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 3. 손상과 변형이 있거나 처리상태가 나쁜 것은 2점 4. 손상과 변형이 현저히 많거나 처리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
	색깔 (색택)	1. 고유의 색깔이 우량한 것은 5점 2. 고유의 색깔이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 3. 색깔이 나쁜 것은 2점 4. 색깔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
	선별	1. 크기 및 품질이 균일하고 이종품 및 파치품의 혼입이 없는 것은 5점 2. 크기 및 품질이 균일하고 이종품의 혼입이 없고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 3. 크기 및 품질이 약간 불균일하고 이종품의 혼입이 있으며 파치품의 혼입이 있는 것은 2점 4. 크기 및 품질이 불균일하고 이종품의 혼입이 있고 파치품의 혼입이 많은 것은 1점
냉동품	선도	1. 선도가 우량하고 고유의 신선취가 있는 것은 5점 2. 선도가 양호하고 고유의 신선취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 3. 선도가 떨어지고 이취(유화수소, 암모니아취)가 약간 있는 것은 2점 4. 선도가 불량하고 이취(유화수소, 암모니아취)가 있는 것은 1점
건조품	풍미	1. 충해 및 곰팡이가 없고 고유의 풍미가 우량한 것은 5점 2. 충해 및 곰팡이가 없고 고유의 풍미가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 3. 충해 및 곰팡이가 없고 고유의 풍미가 보통인 것은 2점 4. 충해 및 곰팡이가 없고 고유의 풍미가 불량한 것은 1점

☞ 근거: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6.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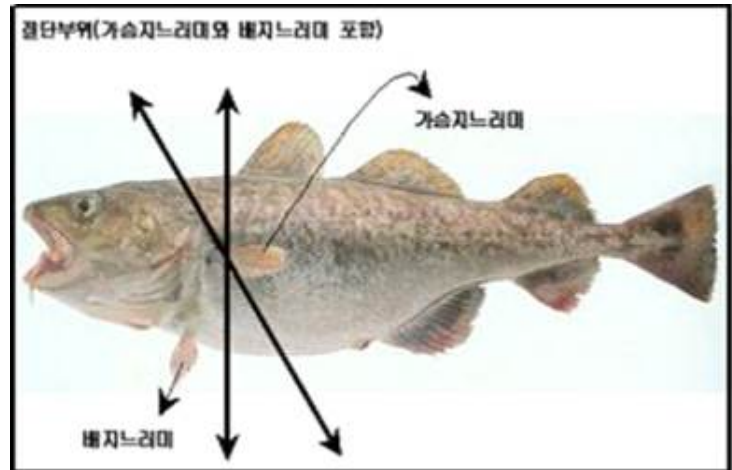
④ 냉동파타고니아아일랜드고기(외관 부적합)



<냉동식용어류머리 처리기준>

☞ 어류머리는 아래 사진(대구)의 예시와 같이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를 포함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기저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함**, 인위적으로 어류머리 가식 부위를 제거하여서는 아니 됨

* 기저부위가 훼손되거나 절단되면 부적합



☞ 근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3.60) 및 「특별위생 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III. 수입신고 주요 질의(Q&A)

< 구비서류 관련 >

Q.1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 ✓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매 수입 시 생산지 증명서(13개 이외 지역) 또는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포함하는 정부증명서(13개도·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지증명서는 제조일자별로 수량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방사능 검사 성적서는 제조일자별로 각각 검사한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3개 도·현(수산물은 일부 상이) :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사이타마, 치바, 미야기, 가나가와, 도쿄, 나가노, 야마가타, 니이가타, 시즈오카

- ✓ 특히, 일본산 수산물 수입 시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8개 도·현**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증명서 원본 및 생산지증명서가 요구되며, 이외 나머지 도·현에 대해서는 생산지증명서가 요구됩니다.

* 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

** 가나가와, 도쿄도, 홋카이도, 에히메, 구마모토, 미에, 가고시마, 아이치

Q.2 수입 수산물 수입 시에는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입신고 하려는 자는 수산물 수입신고 시 별지 제25호서식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참고로, 위생약정국*의 해외제조업소는 약정에 따라 우리 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가능하며, 한글표시에 약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록번호 표시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약정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에콰도르, 러시아,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아르헨티나, 스페인

Q.3

노르웨이 수산물이 프랑스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위생약정국*으로부터 수입신고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구비서류인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약정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에콰도르, 러시아,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아르헨티나, 스페인
- ✓ 노르웨이산 수산물이 프랑스에서 통관된 경우, 위생증명서 첨부이 필요하지 않으며, 통관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재수출(단순 경유) 된 경우 노르웨이 위생 당국이 발행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4

축산물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 ✓ 축산물을 수입신고 할 때는 수출국 정부가 식약처장과 협정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출 위생증명서’는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원본(부분을 포함한다)이어야 합니다.
- ✓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은 ‘우리 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 정책정보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프랑스에서 생산한 버터를 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위생증명서는 어느나라에서 발행해야 하나요?

- ✓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식품 의약품안전처장과 협정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제9호에 "수출국"이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프랑스에서 생산된 완제품인 축산물(치즈)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출국(제조국 포함) 외의 국가에서 선적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선적 국가가 해당 축산물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 서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출제품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6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 ✓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증명 내용 이외에 발행한 제조회사명(소재지 포함), 발행인(직책 포함), 발행일, 연락처(e-mail,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Q.7 BSE(소해면상뇌증) 관련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 ✓ BSE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 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 BSE 발생 이력 36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 ✓ 다만, 우지가공품, 젤라틴, 콜라겐, 제2인산칼슘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매 수입 시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 또한, BSE 비발생국가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은 ‘BSE 발생국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 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수출국 정부증명서(관련단체, 협회 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가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를 포함)’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Q.8 유기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 ✓ 해외생산 유기식품을 판매나 영업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서식의 유기식품 등 여부에 '예[√]' 로 체크하고 유기식품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기식품 수입신고 대상

- ① 동등성 인정제품: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미국·EU·영국·캐나다)의 유기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
- ② 국내법 적용 인증제품: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1) 동등성 인정제품

- 협정국(미국·EU·영국·캐나다) 인증기관이 발급한 유기인증서 사본 또는 전자수입 증명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전자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

2) 국내법 적용 인증 제품

- 농관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사본과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 원본 또는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전자 거래인증서

※ 유기인증 관련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054-429-4183)로 문의

Q.9 검사명령제 대상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시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네,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서는 반려되며, 검사명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부적합 식품은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에 따라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영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검사하여 적합한 식품만 수입하도록 하는 검사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국가, 검사항목, 사유, 기간, 시험법, 영업자(대상 영업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 검사명령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알림 → 공지/공고 → 공지→'명령' 검색)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Q.10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는 제품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 모든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외화획득용, 자사 제품제조용, 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제품과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됩니다.
- ✓ 제출하는 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촬영한 사진 뿐만아니라 수출국에서 제품 선적전에 촬영한 것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사진 제출 범위

- ① 제품 전면 사진(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식품과 닿는 면의 재질과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② 최소 판매단위 주표시면(제품명, 내용량)
- ③ 최소 판매단위 수출국 표시 제조회사, 원재료명, 제조일자(포장일자) 또는 소비기한, 수입신고서 상의 표시*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유기식품 등, 할랄인증 수입식품, 식품조사처리 여부 등 표시
- ④ 한글표시사항 또는 현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 사진
* 자사제품제조용,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등 한글표시사항 생략 대상인 경우 수출국표시사항 첨부 가능

< 표시사항 관련 >

Q.11 식품등에 “무보존료”, “보존료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는 있나요?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보존료(13종)*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최종 제품에 검출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반면, 보존료(13종)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1) 보존료를 사용할 수 있는 ‘소스’는 무보존료 표시 가능
(예시2) 보존료(13종)를 사용할 수 없는 ‘면류’에 무보존료 표시는 불가
-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

Q.12 제품에 글루텐이 없다면 '무글루텐', '글루텐프리' 등의 문구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Q.13 설당 대신 일룰로오스를 사용하여 영양성분 강조표시 당류 "저"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저당" 표시가 가능한가요?

-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3) 가)에 따라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2)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 당류 '저', '무' 표시기준: (저)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미만일 때
- 열량 '저', '무' 표시기준: (저)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0kcal미만일 때
(무) 식품 100ml당 4kcal미만일 때
- 지방 '저', '무' 표시기준: (저)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1.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 미만일 때
- 콜레스테롤 '무' 표시기준: 식품 100g당 5m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5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ml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 ✓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성분과 함께 9가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단, 열량,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제외함
- ✓ 일룰로오스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 상기 규정의 당류 '저', '무'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영업자의 책임하에 “저당”, “무당” 표시는 가능합니다.
- ✓ 영양성분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을 포함하여 9가지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영양성분 표시 도안에 따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Q.14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도 ‘고카페인 함유’ 표시해야 하나요?

- ✓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등은 다음의 표시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가) 제품명, 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라) 보관방법, 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바) 내용량, 원료명 및 함량(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여야 하나,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용 식품등은 상기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15 합성바나나향을 사용한 캔디류 제품의 제품명으로 '바나나 캔디'를 사용할 수 있나요?

- ✓ 제품에 ‘바나나’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합성향료물질만을 사용하였다면 제품명에 ‘바나나향’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가. 3) 다)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로 향료만을 사용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글씨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재료의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해 향료물질로 사용한 것이 합성향료물질로만 구성된 것에 한한다.

(예시)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Q.16 수입신고 시 원재료 배합비율을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 ✓ 주원료(수입신고 제품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원재료)와 사용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배합비율을 밝혀 신고하여야 하나, 모든 원재료의 배합비율(100%)을 기재하지 않아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배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는 원재료의 함량은 “0”으로 신고가 가능

- ✓ 다만, 기준·규격 적용 및 표시기준 등 검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원재료의 배합비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17 복합원재료를 구성하는 6순위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 ✓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제품에 1) ~ 3)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2) 1)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1) 및 2) 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₂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 ✓ 복합원재료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6가지 이상의 원재료는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나, 최종제품 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라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

Q.18 수입수산물의 신규품종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관할 지방식약청(또는 수입식품검사소)이 현품의 한국명, 영명, 학명, HSK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규 품종코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 ✓ 해당 품종코드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수산물 원료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후 지방청장이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입수산물 신규 품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면 신규 품종코드가 신설됩니다.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수산물 원료 조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명시되어 있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World Register of Marine Species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고, 식용 근거, 학명·이명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원료와 기름치는 제외한다.

Q.19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은 다시 수입할 수 없나요?

- ✓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유통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식품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1)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 선정
 - 2)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
- ✓ 다만,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농·임·수산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 제외)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제품명 포함)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 소비기한)가 모두 동일한 수입 식품등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부적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20 최초 정밀검사 시 검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최초 정밀검사 시에 검사기관은 민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해당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에 희망하는 민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우리 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정밀검사 비용은 검사항목별로 검사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검사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 민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검사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니 해당 검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가 불가한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민간검사기관의 검사항목(품목)에 따른 시험검사 가능여부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의뢰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일림자료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자료】 알기 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안내서-1148-02, 2026.2.9.] 및 2025 자주하는 질문집(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안내서-1460-01, 2025.11.28.]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
 - ②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함
 - ③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5조(민원 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59호) 관련

- **고시 제26조(행정사항)** ④ 지방청장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과 관련된 필요한 증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보완 절차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다만, 증명자료가 전 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시 제15조(수산물의 검사수량 및 품명 확인 등)** ②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이 일치하지 않으나 품명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수입 신고서류 및 한글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 **고시 제17조(표시기준 등의 확인)** ②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6. 사용농도 및 희석배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7.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8.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9.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10. 영양·기능정보의 단위(예 : kg, mg, μ g 등)를 누락한 경우
 11.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 ③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해당 식품등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농·임·수산물 및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수입식품등은 제외)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한 수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반려된 수입식품등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은 재수입신고 할 수 없다.
- ⑤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 중 수입신고서의 등록시설명(등록번호 포함)과 다르게 등록시설명이 포장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고, 수입신고 내용 등 관련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 **시행규칙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 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①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②의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③ 폐기

○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59호) 관련

- **고시 제18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부적합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하여 주문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식품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분을 받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5회 연속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수입 수산물의 경우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인위적 물주입 또는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정밀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국산 수산물 부적합 현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수입 축산물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이 검출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